

파키스탄 대법원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(Islamic Republic of Pakistan)
2. 수도 : 이슬라마바드(Islamabad, 101만명)
3. 인구·면적 : 2억 3,582만명(2022), 79.6만km²(한반도의 약 3.5배)
4. 공용어 : 우르두어, 영어
5. 1인당 GDP : 1,660달러(2022년)
6. 독립일 : 1947. 8. 14.(영국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원내각제, 양원제

1. 명칭 : 대법원

- Supreme Court of Pakistan

2. 연혁

- 1947. 8. 14. 영국으로부터 파키스탄 자치령으로 독립
- 1948. 연방법원(연방대법원의 전신) 설립
- 1956. 3. 23. 첫 헌법(1956년 헌법) 발효,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수립
- 1956. 대법원 설립
- 1973. 8. 14. 1973년 헌법 공포

3. 구성

- 대법원장 1인과 그 외 1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, 임시(ad hoc)대법관을 두고 있음(헌법 제176조, 대법관 수에 관한 대법원법 제2조, 헌법 제182조)
- 대법관 자격 : 파키스탄 국민으로서, 5년 이상 고등법원 판사였거나 15년 이상 고등법원 변호사였던 자(헌법 제177조 제2항)

-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며 의회위원회가 확정된 후 대통령이 임명함(헌법 제175A조, 헌법 제177조 제1항)
- 대통령은 대법관 중 가장 연장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함(헌법 제175A조 제3항)
-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이며 그 전에 사임하거나 헌법에 따라 해임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직을 유지함(헌법 제179조)
- 대법원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대통령은 다른 대법관들 중 가장 연장자를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함(헌법 제180조)
- 대법관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대통령은 고등법원 판사 중 대법관 자격을 갖춘 자를 임시로 대법관 권한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음(헌법 제181조 제1항)
- 대법원은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본청을, 4개 주에 각각 지청(Branch Registry)을 두고 있음

4. 권한

- 원심관할권(Original Jurisdiction)(헌법 제184조)
 -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부기관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원심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확인판결(declaratory judgment)만 내릴 수 있음
 - 고등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이행에 관해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
- 상고심관할권(Appellate Jurisdiction)(헌법 제185조)
 - 고등법원의 판결, 명령 등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함
(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헌법의 해석에 관한 실제적 법률문제가 포함된다 고 확인한 경우 포함)
- 권고적관할권(Advisory Jurisdiction)(헌법 제186조)
 - 대통령은 공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언제든지 대법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

5. 심리 및 결정

-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함(대법원규칙 제XI조)
- 상고허가신청, 고등법원의 1인 재판부에 의한 판결 및 명령에 대한 상고, 행정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대한 상고, 보석허가나 보석취소에 관한 상고는 2인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적절한 경우 더 큰 재판부로 회부할 수 있음(대법원규칙 제XI조)
- 의견이 동수로 나뉜 경우,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 그가 지명한 다른 대법관이 나 더 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음(대법원규칙 제XI조)
- 대법원 판결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됨(대법원규칙 제X조 제1항)
- 대법원의 모든 결정은, 법률문제를 결정하였거나 법률원칙에 근거하였거나 또는 법률원칙을 밝힌 범위에서는, 파키스탄 내 모든 법원을 구속함(헌법 제189조)

6. 연락처

- 주 소 : Supreme Court of Pakistan,
Constitution Avenue, G-5/2 Islamabad,
Pakistan
- 전화번호 : +92-5192-20-581 ~ 600
- 이 메 일 : mail@supremecourt.gov.pk
-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upremecourt.gov.pk/>

※ 출처 : 파키스탄 대법원 홈페이지
파키스탄 헌법
파키스탄 대법원규칙

(2022. 12. 작성)